

-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86
------------	----

2018년 9월 6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8년 9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고흥석)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관련법령 : (공동)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 사업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 지하철 친환경 LED 조명 교체
-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구축
-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 테마역사 등 문화예술철도 조성
- 기타 지하철 안전관리 사업 등

(3) 출자의 필요성

- 하루 8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에의 예산 지원 필요
- 지하철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충당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안전대책 추진이 불가능 실정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2019 회계연도 지하철 분야 출자예산 편성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다만, 시의회는 동 동의안에 대해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 필요성 및 주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 여부를 의결하는 것일 뿐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함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과거 두 기관으로¹⁾ 운영했던 공사를 통합하여 지난 2017년 5월 31일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6월말 기준 영업연장 300.1km, 지하철역 277개역, 전동차 3,551량을 운영하면서 일평균 726만명의 수송인원 및 38억 7백만원의 운수수익을 나타내고 있음

1) 서울메트로(1~4호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5~8호선)

- 그러나 서울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승객 일인당 수송원가에도²⁾ 미치지 못하는 운임수준과³⁾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 및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실시에 따른 운영손실로⁴⁾ 매년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출자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서울시가 검토 중인 '19년 지하철 분야 출자금액은 '18년 대비 32.2%(2,048억 10백만원) 감소한 4,314억 73백만원으로 '19년 출자금액이 급감한 주된 사유는 '19년 도시철도공채 부채 원금 상환 만기 도래에 따른 공사전출금이 '18년에 비해 2,077억 58백만원이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임
- 서울시가 검토한 '18년 대비 '19년 지하철 분야 출차계획(안)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국비·시비·운영기관 매칭 사업은 10.4%(98억 30백만원) 증가한 1,047억 70백만원,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등 시비·운영기관 매칭 사업은 16.5%(50억 89백만원) 감소한 258억 33백만원, '공사전출금' 등 전액 시비 사업은 41.1%(2,095억 52백만원)

2) 2017년 기준 서울지하철 1~8호선 일인당 수송원가 1,441원
 ※수송원가 = 총괄원가(영업비용+자본비용)/수송인원(승차인원기준)

3) 2017년 기준 서울지하철 1~8호선 일인당 평균운임 942원
 ※평균운임 = 운수수입/수송인원(승차인원기준)
 ※교통카드 이용 기준 기본운임 1,250원(10km이내), 10이상~50km미만 구간은 매5km마다 100원 추가, 50km이상 구간은 매8km마다 100원 추가

4) 2017년 서울지하철 1~8호선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액은 3,506억 47백만원이며, 이는 2017년 당기순손실 5,253억 62백만원의 66.7%를 차지하는 규모임

감소한 3,008억 70백만원을 출자코자 하는 것임

※ 참고 :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편성검토안)	증 감	비 고
합 계	636,283,190	431,473,230	△204,809,960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4,700,000	73,010,000	28,310,000	국비:시비:운영기관 =40%:30%:30%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8,350,000	0	△28,350,000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1,890,000	7,518,500	△14,371,500	'19년 국비:시비:운영기관 =30%:35%:35%
지하철역 공기질 개선사업	0	24,242,000	24,242,000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2,735,000	2,735,000	0	
지하철 친환경 LED 조명 교체	291,000	212,000	△79,000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구축	0	7,328,000	7,328,000	시비:운영기관 =50%:50%
PSD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	2,985,600	0	△2,985,600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2,210,000	2,258,000	48,000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21,400,000	12,000,000	△9,400,000	시비:운영기관 =13%:87%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1,300,000	1,300,000	0	시비 역당 1억원씩 출자
공사전출금	505,381,590	297,623,730	△207,757,860	
문화예술철도 조성	1,850,000	3,246,000	1,396,000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1,400,000	0	△1,400,000	
지하철 역사내 스마트도서관 설치(시민참여)	140,000	0	△140,000	시비 100% 출자
지하철 명동역 테마계단 조성(시민참여)	50,000	0	△50,000	
지하철 창동역 연결통로 환경개선(시민참여)	1,000,000	0	△1,000,000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시민참여)	600,000	0	△600,000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담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지하철에 대한 2019회계연도 출자 동의는 필요 하다 할 것이며, 각 사업별 출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추 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자구노력을 통해 운영적자를 최소화해 나가 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서울시는 출자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사업 추 진과 예산 집행을 적기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에 만 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86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분야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관련법령 : (공통)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 사업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 지하철 친환경 LED 조명 교체
-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구축

-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 테마역사 등 문화예술철도 조성
- 기타 지하철 안전관리 사업 등

다. 출자의 필요성

- 하루 8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에의 예산 지원 필요
- 지하철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충당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안전대책 추진이 불가능 실정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소순선 (☎2133-2248)